

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 
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**검 토 보 고 서**

【최인순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6. 13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경 과

의안 제550호로 2025년 5월 30일 최인순 의원 외 4명으로  
부터 발의되어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차시설  
설치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,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 
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정의(안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사업추진 및 홍보(안 제4조 ~ 5조)

라. 안전교육 및 실태조사(안 제6조 ~ 8조)

마. 이용자·사업자 준수사항(안 제9조 ~ 10조)

바. 무단방치 및 위반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 ~ 12조)

사. 협력체계 및 시행규칙(안 제13조 ~ 14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로교통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5. 6. 3.~2025. 6. 10.)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□ 개정 배경 및 취지

-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, 국내 최초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도입된 2018년 9월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급증하였으며, 연간 약 2,000건 이상으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.

|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(단위: 건) |  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연도                    | 2019 | 2020 | 2021  | 2022  | 2023  | 2024  |
| 건수                    | 447  | 897  | 1,735 | 2,386 | 2,389 | 2,232 |

- 2023년 기준 사고 유형별로는 ‘차대 사람 사고’가 전체의 46%를 차지하여, 전체 차종 평균인 18.7% 대비 약 2.5배 높은 수치를 보임.
- 이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통행 방법을 위반하고 보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차종에 비해 사람과의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함.
-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전임.

## □ 주요 내용으로

- **안 제2조(정의)제1호**는 「도로교통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서술한 정의를 법 조항의 인용을 통해 입법경제성을 제고하였으며,
  - **제2호(이용자)** 및 **제3호(대여 사업자)**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조문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함.
- **안 제4조(사업추진)제1항**은 ▲안전시설 설치사업 ▲민관협력사업 ▲홍보·교육 ▲통행금지 도로 운영 등 세부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추진의 방향성을 제시함.
- **안 제6조(안전교육 등)제1항**은 기존 안전교육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문을 구체화하여 안전교육 내용과 방향성을 제시함.
- **안 제7조(안전이용기준의 마련)**는 구청장이 ‘안전이용기준’을 마련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해당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의견 청취 절차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실행가능성을 제고함.
- **안 제8조(실태조사)제1항**은 사업추진 및 안전이용기준을 마련할 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  - **제2항**은 사업 추진 시 관련 대상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함.
- **안 제9조부터 제11조**까지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, 대여사업자 및 일반 구민 등에게

준수해야 할 규범적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.

- 안 제12조(주·정차 위반에 관한 사항)는 법 1)제1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)제2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조치 사항을 명시함.

## □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 전동킥보드 도입 이후 급증한 사고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, 사업추진 및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,
  - 안전이용기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, 이용자, 사업자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제시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보행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---

1) 제147조(위임 및 위탁 등)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2) 제86조(위임 및 위탁) ②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.

2.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

# 참고 자료

## 1

## 도로교통법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도로”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.

가.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

나. 「유료도로법」에 따른 유료도로

다.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도로

라.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(車馬)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

17. “차마”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.

가. “차”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) 자동차

2) 건설기계

3) 원동기장치자전거

4) 자전거

5)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(動力)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. 다만, 철길이나 가설(架設)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, 유모차, 보행보조용 의자차, 노약자용 보행기,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·장치는 제외한다.

나. “우마”란 교통이나 운수(運輸)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.

19. “원동기장치자전거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.

가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(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)의 이륜자동차

나.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(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)의 원동기를 단 차(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)

19의2. “개인형 이동장치”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

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20. “자전거”란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.

21. “자동차등”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.

21의2. “자전거등”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.

24. “주차”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.

**제147조(위임 및 위탁 등)** ①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## 2 도로교통법 시행령

**제86조(위임 및 위탁)** ②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.

1. 구 및 군 소속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면권(任免權)
2.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
3.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·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하는 권한
4. 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(법 제29조제4항·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)